

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0. 11.

1. 제안이유

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10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시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